

2017 농식품 스타콜라보 마케팅 사업 신청 안내(공고문)

농식품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중인 수출업체 대상
스타콜라보 홍보마케팅 사업을 지원하여 한국 농식품의 해외시장 인지도 제고

□ 모집개요

구 분	스타콜라보 마케팅 지원
지원대상	○ 신선농산물 또는 국가인증* 농식품 브랜드 제품 * 전통식품품질인증, 술품질인증('나'형), 6차산업화 인증, 지리적표시(GI) 인증 등 * 지원업체에서 제품 브랜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
지원내용	○ 한류스타와 연계한 콘텐츠 제작비용, 상품 온·오프라인 해외 홍보 등 * 수출상품화, 글로벌 브랜드지원사업 등 aT 기존 사업의 홍보마케팅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 지원 제외
사업비 지원한도	○ 총 사업비의 80%이내 (최대 50백만원)
선정방법	○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내·외부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을 통해 계량, 비계량 평가

* 수산식품 제외 / * 대기업 지원 제외

□ 신청방법 : 「온라인 신청」

-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<http://global.at.or.kr>) 접속 → 수출지원사업 신청 → 스타콜라보 마케팅 사업 선택 → 신청하기

○ 신청기간 : 2017. 5. 22(월) ~ 6. 9(금) 18:00 限

○ 신청서류 : [지원신청서 jpg, pdf 파일 등으로 등록](#)

* 기타 제출서류(불임참조)는 jpg, pdf 파일 등으로 첨부하여 e-mail 송부 : collabo@at.or.kr

□ 심사 및 선정

-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(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aT 및 유관기관 농식품 수출 및 브랜드 관련 전문가로 구성)
- 종합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

□ 선정업체 지원사항

지원항목	세부지원내용 예시
스타콜라보 마케팅	○ 제품 인지도 향상을 위한 해외 온·오프라인 홍보 - 스타 활용 홍보 콘텐츠 제작 일부 지원 - CF, 포스터, 지면광고, 옥외광고, 홈쇼핑, 온라인매체, 인터뷰 영상, 해외행사(런칭쇼, 팬사인회, 상품 설명회 등) 등 제작 콘텐츠를 활용한 해외 홍보 * aT의 기존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내용(상품화, 글로벌브랜드, 판촉, 박람회 등) 지원제외 * 브랜드 개발, BI·제품 라벨링·패키지 등 디자인·개선 제외

□ 기업분류 기준

* 대기업 :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
* 중견기업 : 산업발전법 제10조 2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업체

□ 문의처 : aT 식품수출부 전유현 과장 (Tel : 061-931-0844 / FAX : 061-804-4539)

2017 농식품 스타콜라보 마케팅 사업 심사기준

☐ 심사 및 선정

-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(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aT 및 유관기관 농식품 수출 및 브랜드 관련 전문가로 구성)
- 종합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

☐ 계량평가(30점)

계량항목	세부 평가내용 및 배점					
수출실적	○ 해당 브랜드(품목) 수출액('16년)	100만불 이상	100만불 미만	50만불 미만	30만불 미만	20만불 미만
		10	8	6	4	2
성장성	○ 매출액 증가율 ('15'16년도 증가율)	20.0%이상	15%이상 ~ 20%미만	10%이상 ~ 15%미만	5%이상 ~ 10%미만	5%미만
		10	8	6	4	2
안정성	○ 자기 자본비율	50%이상	50%미만	45%미만	40%미만	35% 미만
		10	8	6	4	2

* 자기자본비율(%) : 자본 / 자산

☐ 비계량평가(70점) : 업체별 사업계획(PPT) 발표를 통한 면접평가

비계량 항목	세부평가내용	배점
사업 이해도 및 마케팅 역량	○ 스타콜라보 마케팅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이해도 ○ 스타콜라보 마케팅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등 기본 역량	20
사업계획 적정성	○ 목표국가 시장분석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○ 홍보마케팅 방식의 적정성	20
제품 유망성	○ 선정 제품의 품목 경쟁력(품목 유망성, 디자인 등) ○ 해당 제품의 목표시장 경쟁력(시장점유율, 경쟁자 강도 등)	20
기대효과	○ 제안사업을 통한 목표시장 내 제품 인지도 제고 효과	10